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27호 2022. 8. 30.(화)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27호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	1
남해군 조례 제2628호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남해군 조례 제2629호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1
남해군 조례 제2630호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17호 「고사~동비(지방도102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	20
남해군 고시 제2022-118호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	22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086호 소재불명자 공고 .....	26
남해군 공고 제2022-1103호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1
남해군 공고 제2022-1108호 「큰양아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공고 ·	34
남해군 공고 제2022-1122호 소재불명자 공고(고사~동비간 도로확포장공사) .....	37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27호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을 공포한다.

2022년 8월 3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경제적 상황,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노인(노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군수가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 법인·단체 중 노인급식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시설 등을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노인이 지정된 급식장소에서 무료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이 급식장소 외의 장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급식장소”란 군수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노인급식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노인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급식기관의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평균 노인급식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급식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급식을 하는 시설 등도 급식기관으로 본다.

**제6조(급식기관 모집)** ① 군수는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식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기관의 노인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급식기관의 책무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 시설 및 위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비용 징수 등)** ①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다른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급식 제공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 가스, 취사시설, 소방 등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급식기관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① 급식기관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과 새마을 부녀회원,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되고 노

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교부 및 노인급식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각각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노인급식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전화번호	
	주소							

신규신청 (√ 체크)

적격 여부 판단	<input type="radio"/>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input type="radio"/> 기타 독거노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input type="radio"/> 거동이 불편한 자	[ 여 / 부 ] [ 여 / 부 ] [ 여 / 부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인 (√ 체크) [ ]
---	---------------------

유의사항

1. 해당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화방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로 송부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확인 (√ 체크) [ ]
2. 남해군에서 자격확인 후 수급여부가 결정되며, 대기자가 많을 경우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등급서비스 등 중복서비스 수혜시 도시락지원은 중지됩니다.	[ ]

추가 제출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 '기타 독거노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상담기록지와 그 외 증빙서류 제출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 신청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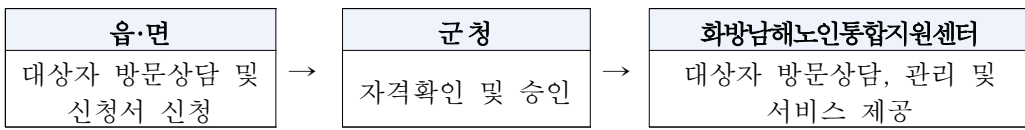
남해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자격 노인
- 기타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처리 절차



[별지 제2호서식]

복 지 대 상 자 상 담 지

상 담 일		상 담 자		면접장소	<input type="checkbox"/> 가정방문 <input type="checkbox"/> 내방 <input type="checkbox"/> 전화
대 상 자 성 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상담내용	1. 가족사항(동거가족, 자녀 유무 등)  2. 건강상태  3. 주거상태  4. 경제상태  5. 기타				
타 서비스 수혜여부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b>※ 위의 사업해당시 중복지원 불가</b>				
담당자 의견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필요성 기재				

남해군 조례 제2628호

##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다.

2022년 8월 3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및 일상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복장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하지 않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및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신입생

- 2. 전학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경상남도 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학생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시기는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등의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는 매년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복구입비등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읍·면장은 교복구입비등 지원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자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자에 대한 교복구입비등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교복구입비등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2.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교복구입비등 지원 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학교명	(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주소 (도로명)					
전학생만 기재	전학일	년 월 일	이전 학교명	( ) 학교( 시도 시군구)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	지원받은 금액	원(기관 : )
-----------	--------------	---------	----------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경남도외 학교 : ①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② 학칙, ③통장사본
- 대안 교육 기관 : ①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공통(②~ ③)
- ④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 포함), 학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전입생(전학일, 이전학교명)	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	5년
신청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	5년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 조례 제2629호

##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공포한다.

2022년 8월 3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는 읍·면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장소로 선정하되,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유용한 기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신규설치는 지양하고 기존 시설은 보수 및 유지 위주로 관리한다.

- ②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바닥 및 기구 간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한다.
- ③ 야외운동기구의 흔들림이나 빠짐이 없도록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 총괄 및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1. 총괄부서: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이하 “점검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
- 2. 관리부서: 점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② 관리부서는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보수·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체 보수·정비가 어려운 경우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 표시문)**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

안내 표시문 (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별지 서식]

## 야외운동기구 점검 대장(제7조 관련)

순번	관리 번호	야외운동 기구명	설치 년도	위치	점검 일자	점검 결과	그 밖에 사항

## ※ 점검 체크 리스트

- 야외운동기구 운동방법, 주의사항, 안내문 등 훼손 여부
-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 흔들림 등 구조적 안정성 여부
- 목재부분의 부식, 금속재질의 부식 발생 여부
- 손잡이 흔들림 또는 파손, 볼트나 나사 풀림 상태
- 야외운동기구 바닥표면 상태, 기구 및 주변 청결 제반 운동 여건 등



남해군 조례 제2630호

##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다.

2022년 8월 30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 를 “제3조제6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을 “공연·전시·창업시설, 운동·휴게시설” 로, “문화·여가” 를 “문화·여가·일자리 창출 등을” 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 을 “면제”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대상은 별지 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위촉한다” 를 “위촉하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위하여” 를 “위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도시재생 활동가) ① 군수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수료한자 중 선발된 사람을 도시재생 활동가(이하 “활동가” 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활동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설명, 의견수렴, 주민간 협의 유도 등 의사전달 역할
2.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지원
3. 지역 및 주민 여건과약을 통한 공동체 지원사업 발굴
4.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활동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계획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m <sup>2</sup>	
신청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	성명 또는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단체의 대표자 성명		
	(남/여)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계획(별지 사용 가능)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별지 사용 가능)

신청인 첨부서류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17호

「고사~동비(지방도102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고사~동비(지방도102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6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설천면 고사마을 ~ 동비마을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로 확포장공사
  - 명 칭 : 고사~동비(지방도1024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 다. 사업 량 : L=1.68km, B=11.0m ~ 12.5m
-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남해군 홈페이지 참고
-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

2. 열람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14일간, 남해군 건설교통과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 8.16. ~ 8. 29. (14일간)

나. 제출방법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의견서 제출

다. 기타 상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4, 3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2-118호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6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3일

남 해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684,726,435	590,017,057	94,709,378	16.05%
일 반 회 계	581,002,567	508,431,317	72,571,250	14.27%
특 별 회 계	103,723,868	81,585,740	22,138,128	27.13%
상수도특별회계	28,949,693	27,467,174	1,482,519	5.40%
청사건립특별회계	38,073,670	17,687,500	20,386,170	115.2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1,731	755,024	26,707	3.5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4,831	229,700	25,131	10.94%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5,663,943	35,446,342	217,601	0.61%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581,002,567	508,431,317	72,571,250	14.27%
지 방 세 수 입	26,439,820	26,439,820	-	0.00%
지방세	26,439,820	26,439,820	-	0.00%
세 외 수 입	21,953,566	19,948,351	2,005,215	10.05%
경상적세외수입	9,618,325	9,423,616	194,709	2.07%
임시적세외수입	11,846,841	10,036,335	1,810,506	18.04%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88,400	488,400	-	0.00%
지방교부세	271,809,969	215,441,000	56,368,969	26.16%
조정교부금등	27,850,350	26,901,150	949,200	3.53%
보조금	192,251,848	189,495,792	2,756,056	1.45%
국고보조금등	146,602,650	146,092,763	509,887	0.35%
도비보조금등	45,649,198	43,403,029	2,246,169	5.1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697,014	30,205,204	10,491,810	34.74%
보전수입등	30,998,756	30,002,352	996,404	3.32%
내부거래	9,698,258	202,852	9,495,406	4680.95%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103,723,868	81,585,740	22,138,128	27.13%
지방세			-	
세외수입	4,731,453	4,630,308	101,145	2.18%
경상적세외수입	4,375,093	4,366,950	8,143	0.19%
임시적세외수입	133,893	86,858	47,035	54.15%
지방행정제제·부과금	222,467	176,500	45,967	26.04%
지방교부세			-	
보조금	26,381,966	25,866,966	515,000	1.99%
국고보조금등	18,737,613	18,737,613	-	0.00%
도비보조금등	7,644,353	7,129,353	515,000	7.2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610,449	51,088,466	21,521,983	42.13%
보전수입등	2,352,136	1,000,000	1,352,136	135.21%
내부거래	70,258,313	50,088,466	20,169,847	40.27%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b>합 계</b>	<b>581,002,567</b>	<b>508,431,317</b>	<b>72,571,250</b>	<b>14.27%</b>
인 건 비	61,732,956	61,358,299	374,657	0.61%
물 건 비	35,001,842	32,565,051	2,436,791	7.48%
경 상 이 전	190,724,484	187,356,089	3,368,395	1.80%
자 본 지 출	188,859,197	174,813,796	14,045,401	8.03%
용 자 및 출 자	14,420	14,420	-	0.00%
보 전 재 원				
내 부 거 래	90,698,217	42,707,966	47,990,251	112.37%
예 비 비 및 기 타	13,971,451	9,615,696	4,355,755	45.30%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b>합 계</b>	<b>103,723,868</b>	<b>81,585,740</b>	<b>22,138,128</b>	<b>27.13%</b>
인 건 비	2,612,637	2,595,536	17,101	0.66%
물 건 비	5,866,742	5,714,279	152,463	2.67%
경 상 이 전	7,633,742	7,633,742	-	0.00%
자 본 지 출	54,159,205	52,622,896	1,536,309	2.92%
용 자 및 출 자	22,131		22,131	순증
보 전 재 원			-	
내 부 거 래	33,000,000	13,000,000	20,000,000	153.85%
예 비 비 및 기 타	429,411	19,287	410,124	2126.43%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086호

소재불명자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국도3호선 남해 초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3. 사업소재지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일원
- 4. 공고사유 : 토지 소유자 거소 등 불명으로 인함
- 5. 협의사항
  - 가. 협의기관 및 방법 : 정당한 소유자는 권리보존(이전)등기 완료 및 등기부의 소유권이외 권리(을구) 말소 후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손실보상금 청구서 제출
  - 나.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협의에 응할 시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거 기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 다.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2022. 08. 26(금)까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
-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초본1통, 인감도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740-2615)로 문의.

**6. 공고대상자 : 별지**

# 소재불명자 공고목록(토지)

◆ 공사명 : 국도3호선 남해 초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관리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비고
		당초지번	편입지번	공부	실제	당초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57-1	산157-6	임	임	9,625	673	1	등)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 송)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이*엽	
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6-1	636-4	전	전	2,174	136	1	등)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 송)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이*엽	
3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5-1	635-4	답	목담	979	10	1	등)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번길*** 송)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번길 **	박*세	
							819				

### 소재불명자 공고목록(지장물)

◆ 공사명 : 국도3호선 남해 초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관리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편입지목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비고
							단위	주 소	
1-1				배나무	R:30cm, H:2.5cm	10	주		
1-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6-4	전	옻나무	R:10cm, H:1.0cm	30	m <sup>2</sup>	등)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 송)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	이*업
1-3				오가피나무	R:20cm, H:2.5cm	23	주		
지장물 합계									1명

소재불명자 공고목록(영농)

◆ 공사명 : 국도3호선 남해 초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영농현황		토지 소유자 및 실제 경작자		비고
		당초	편입	공부	실제	당초	편입	작물	면적(㎡)	주소	성명	
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636-1	636-4	전	전	2,174	136	들깨 등	136	등)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송)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이*연	
	영농합계				1건							

남해군 공고 제2022-1103호

##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건축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남해군 건축조례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제도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북 방향 인접대지 건축물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 확대에 따른 조항 신설로 인한 변경 반영(안 제44조).
- 나.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 규정 반영(안 제44조).
- 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하는 조항 신설로 인한 변경 반영(안 제45조).
- 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과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규정으로 강화한 부분 반영(안 제46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9월 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93, 팩스 055-860-3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전화 055-860-30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86조제2항제1호” 를 “제86조제3항제1호”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이고,” 를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開口部)(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를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로 한다.

제4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차는 100분의 25
  2. 2년차부터는 100분의 5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이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공고 제2022-1108호

## 「큰양아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공고

「큰양아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과 관련,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8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 개요

- 가. 사 압 명 : 큰양아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나. 위 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 290 일원
- 다. 사 업 량 : 급경사지 정비 L=250m
- 라. 사 업 기 간 : 2022. 10. ~ 2023. 12.
- 마. 공사시행자 : 경남 남해군

####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개별통지문 발송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91-2번지 외 6필지 4,2333㎡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붙임 조서 참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함

####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2. 8. 18. ~ 2022. 8. 31.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다) 이의신청 : 남해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으로 서면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22년 8월 ~ (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 시 3인)
  -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협의(계약체결) ⇒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이의제결 또는 소송

-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 이사, 수령거부,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 안전과 자연재난팀(☎055-860-3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군	면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주 소	
1	남해	상주	양아	신291-2	임	19	19	박태오	경남 남해군 상주면	박재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산세 납부자	
2	남해	상주	양아	신290-1	임	2,609	2,609	김해김씨남해송화 종친회	경남 남해군 상주면	김해김씨남해송화 종친회	경남 남해군 상주면	재산세 납부자	
3	남해	상주	양아	808	전	69	69	진만오	경남 남해군 상주면	진만오	경남 남해군 상주면	재산세 납부자	
4	남해	상주	양아	809	전	112	112	김영오					
5	남해	상주	양아	신289-2	임	880	880	김득오	부산시 서구 괴정동	김성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산세 납부자	
6	남해	상주	양아	812	전	258	258	빈영오	경남 남해군 상주면	빈영오	경남 남해군 상주면	재산세 납부자	
7	남해	상주	양아	813-1	전	286	286	김태오	경남 남해군 상주면	김태오	경남 남해군 상주면	재산세 납부자	
계						4,233	4,233						

남해군 공고 제2022-1122호

### 소재불명자 공고(고사~동비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도로과
-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고사~동비 간 도로확포장공사
- 3. 사업소재지 : 경남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일원
- 4. 공고사유 : 토지 소유자 거소 등 불명으로 인함
- 5. 협의사항
  - 가. 협의기관 및 방법 : 정당한 소유자는 권리보존(이전)등기 완료 및 등기부의 소유권이외 권리(을구) 말소 후 경상남도에 손실보상금 청구서 제출
  - 나.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협의에 응할 시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거 기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 다.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2022. 09. 05(월)까지 경상남도 도로과(055-211-2967)
  -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초본1통, 인감도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과(055-211-2967),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7, 3314) 문의.
- 6. 공고대상자 : 별지

토 지 평 가 조 서

\* 고사~동비(지방도 1024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소재불명자 공고목록(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남해군)	지번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비 고	
		분할전	분할후						
1	설천면 진목리	1259	1259-3	답	1,417.0	11.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류*기	
2	설천면 진목리	1259	1259-2	답	1,417.0	14.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류*기	
3	설천면 진목리	산263-2	산263-2	임야	3,967.0	2,184.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	정*임	
4	설천면 진목리	1072	1072-1	답	807.0	185.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	유*환	
5	설천면 진목리	1070	1070-1	답	1,315.0	204.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유*기	
6	설천면 진목리	1039-3	1039-8	답	47.0	6.0	부산 서구 대영로 *****	정*수	
7	설천면 진목리	1040-5	1040-10	답	41.0	12.0	부산 서구 대영로*****	김*범	
8	설천면 진목리	1041-4	1041-10	구거	7.0	1.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박*현	
9	설천면 진목리		1040-4	도로	7.0	7.0	부산 서구 대영로*****	김*범	
10	설천면 진목리	930-4	930-8	대	155.0	53.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류*석	지분30 분의25
10-1	설천면 진목리	930-4	930-8	대	155.0	53.0	경기 파주시 문화로*****	윤*자	지분30 분의3
10-2	설천면 진목리	930-4	930-8	대	155.0	53.0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유*정	지분30 분의25
11	설천면 진목리	930-1	930-6	대	439.0	87.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정*규	
12	설천면 진목리	929-3	929-5	대	555.0	73.0	진주시 석갈로*****	백*재	
13	설천면 진목리		1273-7	답	7.0	7.0	미등록	백*현	
14	설천면 진목리		1231-1	도로	66.0	66.0	미등록	백*현	
15	설천면 진목리	1244-2	1244-3	답	46.0	24.0	부산 금정구 동현로*****	류*준	
16	설천면 진목리		1245-1	도로	261.0	261.0	비라리(미등록)	박*모	
17	설천면 진목리	1214-2	1214-2	도로	93.0	15.0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정*조	
18	설천면 진목리		1007-2	도로	3.0	3.0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유*경	
19	설천면 진목리		1008-2	도로	83.0	83.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유*연	
20	설천면 진목리		1025-2	도로	89.0	89.0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송**세	

토 지 평 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남해군)	지번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비 고
		분할전	분할후					
21	설천면 진목리		1038-2	도로	50.0	50.0	미등록	박*자
22	설천면 진목리		1042-2	도로	109.0	109.0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정*기
23	설천면 진목리	1043-1	1043-5	대	102.0	8.0	양산시 물금읍 백호2길 ***	박*수
24	설천면 진목리		803-4	도로	7.0	7.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백*옥
25	설천면 진목리	803-5	803-8	잡종지	105.0	20.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진***회
26	설천면 진목리		803-3	도로	221.0	221.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백*옥
27	설천면 진목리	807-4	807-6	대	108.0	45.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정*조
28	설천면 진목리	808-5	808-8	도로	4.0	4.0	부산시 사하구 갈천동 ****	강*녀
29	설천면 진목리	925-2	925-4	대	546.0	72.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박*주
30	설천면 진목리		922-1	도로	2.0	2.0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송**후
31	설천면 진목리		838-5	전	23.0	23.0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	백*학
32	설천면 진목리		838-3	도로	46.0	46.0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	백*학
33	설천면 진목리	839-2	839-5	묘지	1,216.0	23.0	미등록	백*환
34	설천면 진목리		762-5	도로	20.0	20.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백*기
35	설천면 진목리	841-3	841-9	도로	94.0	59.0	미등록	정**기
36	설천면 진목리	841-3	841-10	도로	94.0	10.0	미등록	정**기
37	설천면 진목리	산95-2	산95-4	임야	4,306.0	358.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백*훈
38	설천면 진목리	1739	1739-1	답	1,092.7	175.5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하*엽
39	설천면 진목리		635-5	도로	28.0	28.0	진주시 상대동 *****	안*택
40	설천면 진목리		634-1	도로	10.0	10.0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박*업
41	설천면 진목리	1735	1735-1	답	2,026.0	53.7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임*덕
42	설천면 진목리	808-1	808-6	대	443.0	46.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유*준
43	설천면 진목리	836-5	836-7	전	327.0	55.0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정*홍



토 지 평 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남해군)	지번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비 고	
		분할전	분할허						
44	설천면 진목리		838-2	도로	208.0	208.0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	백*학	
45	설천면 진목리		830-1	도로	7.0	7.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신**애	
46	설천면 진목리		762-3	도로	2.0	2.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백*기	
47	설천면 진목리	산90-3	산90-3	도로	397.0	229.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	백*기	
48	설천면 진목리	766	766-3	답	433.0	13.0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	박*보	
49	설천면 진목리	636-4	636-7	답	73.0	65.0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박*엽	
50	설천면 진목리		636-1	도로	60.0	60.0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박*엽	
51	설천면 진목리	666-1	666-3	도로	165.0	70.0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무**린	
52	설천면 진목리	664	664-1	답	906.0	5.0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박*규	

# 물 건 평 가 조 서

소재불명자 공고목록(지장물)

일련 번호	소재지 (남해군)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비 고
1	설천면 진목리	930-4	주택	블럭스레트	41 m <sup>2</sup>	류*영
			창고1	블럭스레트	2 m <sup>2</sup>	류*영
			창고2	블럭스레트	19 m <sup>2</sup>	류*영
			창고3	블럭스레트	21 m <sup>2</sup>	류*영
			대문	철재	1 식	류*영
			바닥포장	콘크리트 (2*2+2*5)	14 m <sup>2</sup>	류*영
2	설천면 진목리	930-1	화장실	블럭슬라브	5 m <sup>2</sup>	정*규
			대문	벽돌슬라브 철재	1 식	정*규
			출입문	철재 (문주포함)	1 식	정*규
			담장1	블럭조 (23*1.6(H))	37 m <sup>2</sup>	정*규
			담장2	블럭조 (7*1.0(H))	7 m <sup>2</sup>	정*규
			키위	R30	1 주	정*규
			철재지지대	3*12	1 식	정*규
			동백	R12	1 주	정*규
			종려	R20	2 주	정*규
			철쪽	H1, W1	4 주	정*규
			사철	H2, R15	1 주	정*규
3	설천면 진목리	807-4	주택	블럭스레트	57 m <sup>2</sup>	정*조
			창고	블럭슬라브	29 m <sup>2</sup>	정*조
			담장	블럭조 (7*1.2(H))	8 m <sup>2</sup>	정*조
			바닥포장	콘크리트 (4*4*1/2)	8 m <sup>2</sup>	정*조
			우물		1 식	정*조
4	설천면 진목리	808-1	주택 및 창고 등	벽돌 슬라브	92 m <sup>2</sup>	유*준

# 물 건 평 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남해군)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비 고
			창고	블럭스레트	3 m <sup>2</sup>	유*준
			대문	벽돌슬라브 (새시)	1 식	유*준
5	설천면 진목리	1042-2	회양목	H1.5	15 주	정*기
6	설천면 진목리	1257-4	벚나무	R15	1 주	류*근
			뽕나무	R50	1 주	류*근
7	설천면 진목리	산263-2	땅두릅		250 m <sup>2</sup>	정*임
			감나무	R15	1 주	정*임
8	설천면 진목리	1037-1외	모과	R15-20	4 주	박*관
			자두	R25	1 주	박*관
			바닥포장	콘크리트 (8*3)	24 m <sup>2</sup>	박*관
9	설천면 진목리	1043-1	대문	메쉬 (L:3)	1 식	박*수
10	설천면 진목리	925-2	대문	철재 (L:4)	1 식	박*주
			담장	블럭조 (8*1.8(H))	14 m <sup>2</sup>	박*주
			바닥포장	콘크리트 (9*5)	45 m <sup>2</sup>	박*주
11	설천면 진목리	635-5	감나무	R30	1 주	안*택